

한국경관학회 우수논문상 등에 관한 규정

(2021.06.3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관분야의 연구와 저술(번역 포함)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우수저술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우수논문상” 이라 함은 한국경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그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2. “우수저술상” 이라 함은 한국경관학회 회원이 저술 혹은 번역한 학술서적 중 그 내용이 우수한 저술물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2장 수상자의 자격

제3조 (시상시기 및 심사대상) 수상은 매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논문상은 전(前)년도 한국경관학회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우수저술상은 전(前)년도에 간행된 전문 저술물 및 번역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수상자는 한국경관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한 자이어야 하며, 우수저술상의 경우 해당 실적물 5부와 별표 1의 실적물 심사요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 이때 실적물 심사요청서에는 본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한국경관학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 우수논문상의 경우, 전년도에 발간된 대상 논문 중 3편 이상을 선정하여 별표 2의 추천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우수저술상의 경우, 전년도에 발간된 대상 저술물 및 번역물 중 3편 내외를 선정하여 별표 2의 추천서와 해당 실적물 5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우수논문상 및 우수저술상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및 우수저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회장, 편집위원장, 각 연구위원회의 회장과 기타 회장이 선임한 회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2개월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4. 심사 대상년도 한국경관학회지에 논문이 수록된 자와 심사대상 저술물 및 번역물의 저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논문, 저술물 및 번역물을 심사하되, 심사기준은 당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 예정자를 선정 후 본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6. 심사위원회는 해당년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5장 시상

제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상한다.

제10조 수상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위원 이외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적물 심사 요청서

우수저술상 실적물 심사 요청서

저자		소속 및 직위	
저서명			
발간일			
ISBN 및 페이지수			
심사 요청 사유	<i>(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i>		
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상기 저서를 한국경관학회 우수저술상 후보로 요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요청일 : 년 월 일

심사 요청자 : (서명)

한국경관학회 편집위원회 귀하

